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4호
- 나.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18명
- 다. 발의일자 : 2022년 10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제안플랫폼 운영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및 조문상의 “주민” 을 “시민” 으로 변경함.
- 나. 시민참여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시민제안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라.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집행부 검토의견(붙임)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와 통합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 위원회와 시민제안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조례의 제명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조문 내용 중 ‘주민’ 을 ‘시민’ 으로 각각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와 통합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 중에서는 ‘시민’ 을 제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지만, 서울시 조례 중 상당수는 ‘주민’ 또는 ‘시민’ 을 제명으로 혼용하고 있음.

'주민'을 제명으로 사용하는 조례	'시민'을 제명으로 사용하는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등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등

-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sup>1)</sup>로 정의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와 관련된 서울시의 조례는 대부분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의 의미로 ‘시민’을 제명과 조문에 사용하고 있음.
-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행정업무 처리와 분쟁 시 규정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하위 규정의 용어가 상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다를 경우 상위 규정의 용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u>

##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안 제17조)

- 개정안은 ▶ 시민제안 ▶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 시민토론 등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여 각계 각층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열린시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시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바, 일반민원·고충민원사항과 분리하기 위한 취지임.

**< 시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안 제2조제5호 각 목) >**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민원
- 다.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라.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마. 그 밖에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집단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 또한,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은 이러한 시민제안의 접수·처리·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제7호의 “시민토론”이란 토론의 의제로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신설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2조에서 시민은 중요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공청회·설명회 실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시민토론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시정 관련 토론 규정은 다른 조항에서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시민토론”이란 토론의 의제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을 말한다.</p> <p>제12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u>이 때 시장은 토론 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u></p> <p>④ (생 략)</p> <p>제17조(시민토론) ① ~ ③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b>&lt;삭 제&gt;</b></p> <p>제12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u>이 때 시장은 토론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u></p> <p>④ (개정안과 같음)</p> <p><b>&lt;삭 제&gt;</b></p>

### (3)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개정안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힘써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서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참여를 강행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를 위한 대상으로 정한 것이지 의무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u>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u>	제4조(시민의 권리) ① -----, <u>시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u>

#### (4) 시민참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 개정안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행하고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설정하지 않았음.
- 그동안 중·장기적 주민참여 체계와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연구회<sup>2)</sup>’를 두었으나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조사, 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기능 등 제한된 역할에 그쳐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음.
- 따라서 시민참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주민참여기본계획과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시정방향 또는 논의주체의 변경과 상관 없이 그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시민참여 정책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2) 2015년도 주민참여기본계획 이행결과보고에 따르면 주민참여연구회 기능으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설조직이 아닌 까닭에 실질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힘들어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 시민참여기본계획 포함사항(안) >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 또한 개정안은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참여가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마련된 것이라 보여짐.
- 다만 시민참여를 위해 구성된 하나의 총괄 부서 또는 기구가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을 맡을 경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 작성되어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행계획의 작성은 서울시 각 기관과 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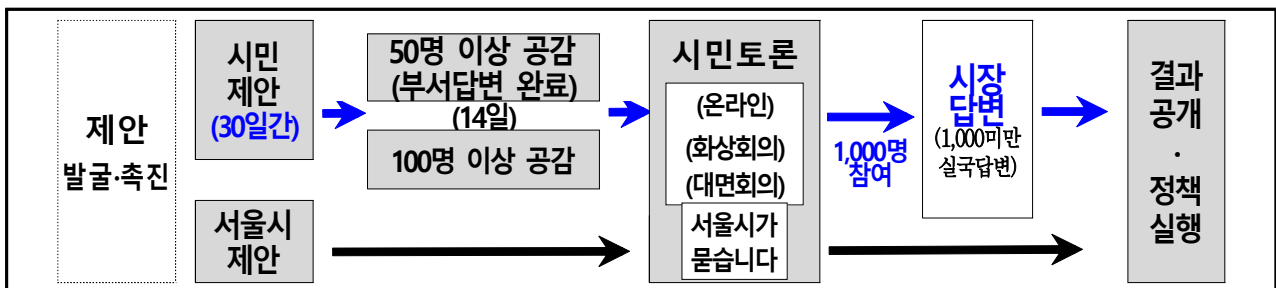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작성·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 (5) 시민제안 제도 운영(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 새롭게 정의한 ‘시민제안’ 과 ‘온라인 제안접수 처리시스템’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 시민제안의 제출

- ▶ 접수 및 검토 등 ▶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 우수제안의 실시 및 보완 ▶ 우수한 시민제안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틀로써 작용할 것이라 판단됨.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은 제2조에서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등 국민제안의 제출·접수·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6년부터 시민제안 플랫폼인 ‘천만상상오아시스’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7년에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시민참여 플랫폼의 시범운영을 거쳐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음.
- ‘민주주의 서울’ 을 통해 접수된 시민제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아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진행하고 있음.

< 시민제안 접수 및 발굴 절차 >



- 한편 개정안은 제1항에서 우수제안의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서울창의상을 수여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음.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는 “제안”을 시민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라고 정의하고, ▶ 수여대상 ▶ 수상자 선정 방식 및 기준 ▶ 부상 등(상장 및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2조제5호는 “시민제안”을 시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상 “제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수제안의 선정과 제안자 수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라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기규정된 조례와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복입법 방지와 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8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의 선정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창의상을 수여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다.</p> <p>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한다.</p>

(6)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개정안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시민참여 관련 기구를 통폐합하여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 －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연구회’가 시민참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서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시민참여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참여연구회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교 >

구분	주민참여연구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목적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조사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구성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 15인 이내	4급 이상 5년 이상 공무원 경력자,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법률·회계 등 전문자격 소지 5년 이상 경력자, 시민단체 10년 이상 경력자 등 15명 이내
연구 또는 심의 대상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필요한 사항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민관 협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개최 시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	정기회(월1회) 및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그 심의·조정 대상에는 ▶ 민관 협치 ▶ 서울시 위원회 운영 계획 ▶ 마을공동체 계획 ▶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됨.

- 이들 사무는 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각 사무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옥상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무별 개별 조례 현황 >**

사무분야	소관 사무에 관한 현행 조례
민관 협치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 위원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되 심의·자문대상을 기본계획, 시민참여 관련 법령·제도·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기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가졌던 포괄적 사무대상을 축소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기존 시민참여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본계획과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부서 간 중첩되는 각 사무분야는 개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무부서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음.

**(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하나로 통합하여 시민참여 관련 규정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 해당 조례의 전신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심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 협치를 빌미로 서울시 행정에서 시민을 동원하여 결국 시민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부작용 우려 ▶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배제될 경우 권리구제 방안 미비 ▶ 다수 시민 참여 시 효율성 저해 ▶ 헌법상 공무담임권 저촉 우려 ▶ 조직 신설로 인한 과다 비용 발생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이후 2019년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당시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조례에 따라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일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활동가만 참여가 가능해 사실상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그 구성원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서울시 행정기구 개편(2021.7.)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해당 조례는 사문화된 상태이며, 더 이상 조례가 유지될 사유가 없어진 것이라 판단되므로 개정안에서 해당 조례 폐지는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다른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조례와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조례의 폐지가 본질적인 정책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폐지조례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입법적 판단이 요구됨.

#### (8)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4조)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 중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로 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관련 조례	개정안	수정의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

- 개정안에서는 ‘회의공개의 원칙’으로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전체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회의 종료 10일 이내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의안번호**  
**025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박성연 의원 외 18명	2022. 10.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b>&lt;개정 필요성&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함.</li> <li>○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제안플랫폼 운영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함</li> </ul> <p><b>&lt;주요 입법 요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명 및 조문상의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함.</li> <li>○ 시민참여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li> <li>○ 시민제안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li> <li>○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li> </ul>		
추진경과	○		
부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취지에 동의함</li> <li>○ 그러나,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제5조제2항),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제8조)한다는 규정은,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 시민, 관련 부서의 검토 등의 많은 행정 업무가 수반됨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간 업무가 중복되고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 : 조례 제정(19.5월) 이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미수립</li> <li>※ 타 시도 사례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경기도(4년), 세종시(5년), 광주시(2년))</li> </ul> </li> <li>○ 제17조(시민토론) 조항은 시민제안의 토론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발의안 제10조에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술의 발달 및 업무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기보다 규칙이나 내부방침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li> <li>○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아울러, 개정안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수립 및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추가해야 할 것임</li> <li>○ ‘시민참여위원회’ 신설 관련하여 조직담당관의 위원회 설치요건 검토 결과 ‘적정’ 통보(조직담당관-29840(2022.12.12.)호)</li> </ul>		
대응방안	○		
상 의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뉴미디어담당관	팀장 유지현(☎2133-6530)	담당 김경민(☎2133-6531)